



# 코로나19 공중 보건 비상사태 중 필수 및 2단계 소매 사업 활동에 대한 임시 지침

본 문서를 읽고 하단에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2020년 6월 15일 월요일 기준

## 목적

코로나19 공중 보건 비상사태 중 필수 및 2단계 소매 사업 활동에 대한 임시 지침("필수 및 2단계 소매 사업 활동에 대한 코로나19 임시 지침")은 제품을 판매하는 필수 및 2단계 소매 사업체의 소유자/운영자가 사업을 운영 또는 재개하는 가운데 자신, 직원, 하청업체를 코로나19 확산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예방조치를 실시하기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본 지침은 주 전역의 필수 소매 사업의 모든 매장 내 활동에 적용됩니다. 이 지침은 2단계 또는 이후 재개 과정을 진행하는 뉴욕주 지역에서 모든 비필수 소매 사업체의 매장 내 활동에도 적용됩니다. 본 지침은 레스토랑이나 기타 음식 서비스, 렌탈 상품 판매점 또는 미용실, 네일 살롱, 스파, 문신 가게, 레이저 체모 또는 전기 분해 요법 등 개인 관리 서비스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필수 사업체, 엠파이어 스테이트 개발공사(Empire State Development, ESD)가 행정명령(Executive Order) 202.6호에 따라 정의한 필수 사업체는 코로나19 공공 보건 비상사태 기간 중 제공 서비스, 수행 기능, 혹은 기업 또는 단체 구조에 관계없이, 대면 인력 감축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단체입니다. 필수 소매 사업체는 모든 식음료 매장, 약국, 편의점, 농부 시장, 주유소, 하드웨어, 가전제품 및 건축 자재 매장을 포함한 식료품 매장이 포함되나 이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ESD 필수 사업 지침을 참조하십시오.

재개 1단계를 진행하는 뉴욕주 지역에서 필수적이지 않은 소매 사업은 커브사이드 및 매장 내 픽업을 통해서만 운영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서비스를 안전하게 수행하는 방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뉴욕주 보건부(Department of Health, DOH) "커브사이드 및 매장 내 픽업 소매 사업 활동에 대한 코로나19 임시 지침"(Interim COVID-19 Guidance for Curbside and In-Store Pickup Retail Business Activities)을 참조하십시오. 이전에 발행된 이 지침은 고객이 전화 또는 인터넷을 통해 특정 아이템을 주문한 후 소매점 또는 그 근처에서 해당 주문 제품을 수령하는 것으로 정의하는 커브사이드 및 매장 내 픽업에 적용됩니다. 고객은 매장 방문이나 대면 주문을 하지 않고 주문 제품을 수령한다는 전제에서만 허용됩니다.

아직 재개 1단계를 시행하지 않은 뉴욕주 지역에서 비필수 소매 사업자는 오직 한 명의 직원만이 사업장에 상주하며 전화 또는 온라인 등 원격 주문 및 배달을 통해서만 운영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지침은 최소 요구 사항일 뿐이며 고용주는 추가 예방 조치나 제한 사항을 자유롭게 시행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지침은 선포 당시의 최선으로 알려진 공중 보건 관행을 기반으로 하며, 이러한 지침의 기반이 되는 문서는 자주 변경될 수 있으며, 실제로 변경되었습니다. 아래에 정의된 바와 같이 책임 당사자(Responsible Parties)는 소매 사업 활동과 관련된 모든 지역, 주 및 연방 요구사항을 준수할 책임이 있습니다. 책임 당사자는 또한 이러한 요구 사항 대한 최신 업데이트 내용을 확인하고 소매 사업 활동 및/또는 사업장 안전 계획에 이를 적용할 책임이 있습니다.

## 배경

Andrew M. Cuomo 주지사는 2020년 3월 7일에 행정명령(Executive Order) 202를 발령해 코로나19에 대응하는 비상사태를 선언했습니다. 코로나19가 뉴욕 전역의 지역사회에서 확산되었습니다. 추가적인 확산을 최소화하려면 가능한 경우 개인 사이에 최소 6피트 이상의 사회적 거리두기를 유지해야 합니다.

2020년 3월 20일에 Cuomo 주지사는 모든 비필수 사업체에 사무실 내 직원 기능을 종료하도록 하는 행정명령 202.6호를 발표했습니다. 엠파이어 스테이트 개발 공사(Empire State Development Corporation, ESD) 지침에 따라 규정된 필수 기업은 대면 제한의 대상이 아니었지만, 뉴욕주 DOH가 발행한 깨끗하고 안전한 작업 환경을 유지하기 위한 지침과 지침을 준수하고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를 가능한 한 유지할 것을 강력하게 권고받았습니다.

2020년 4월 12일, Cuomo 주지사는 필수 사업체에 직장에 있는 직원을 위한 페이스 커버를 무료로 제공하도록 지시하는 행정명령 202.16호를 선포하여, 업무 중 고객 또는 대중의 일원과 직접 접촉할 때 사용해야 합니다. Cuomo 주지사는 2020년 4월 15일 행정명령 202.17호를 발행하여 만 2세 이상으로 의학적으로 페이스 마스크 착용을 감당할 수 있는 모든 개인은 공공장소에서 사회적 거리를 유지할 수 없거나 유지하지 않을 때 코와 입을 마스크나 얼굴을 덮는 천으로 가려야 한다고 지시했습니다. 2020년 4월 16일 Cuomo 주지사는 2세 이상이며 의학적으로 페이스 커버 착용에 문제가 없는 사람이 대중교통 또는 사적 이동수단을 이용하거나 임대 차량을 사용하는 경우 이동 중 코와 입을 가리는 천 소재 페이스 커버를 착용할 것을 의무화하는 내용의 행정명령 202.18호를 선포했습니다. 또한 이러한 차량에 승객이 있는 동안 코와 입을 덮는 천 소재 페이스 커버나 마스크를 착용하도록 대중 또는 민간 교통의 모든 사업자 또는 운전자에게 지시했습니다. 2020년 5월 29일 Cuomo 주지사는 행정명령 202.34호를 선포해, 사업 운영자/소유자에게 차량에 따라 얼굴을 마스크로 가리는 의무 사항을 준수할 것을 거부하는 사람의 입장을 거부할 권한을 부여했습니다.

2020년 4월 26일 Cuomo 주지사는 데이터 중심의 지역 분석을 기반으로 뉴욕의 산업과 비즈니스를 단계적으로 재개하기 위한 단계별 접근 방식을 발표했습니다. 2020년 5월 4일 주지사는 지역 분석 과정에서 코로나19 신규 감염과 건강 관리 시스템, 진단 검사, 접촉 추적 능력을 포함한 여러 공중 보건 요인을 고려할 것이라고 발언했습니다. 2020년 5월 11일 Cuomo 주지사는 지역별 계량 분석 및 지표에 근거하여 재개 1단계가 2020년 5월 15일 뉴욕의 몇몇 지역에서 시작된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2020년 5월 29일 Cuomo 주지사는 재개 2단계가 뉴욕주 몇몇 지역에서 시작되며, 뉴욕 주민, 정부 공무원 및 전문가들이 바이러스가 지속적으로 억제하여 안전한 재개를 보장하기 위한 방식을 검토하고 주의 자료 수집 노력을 집계하는 새로운 조기 경고 대시보드를 시행한다고 발표했습니다.

다음의 기준과 더불어 필수 및 비필수 사업체 모두 DOH가 발행한 깨끗하고 안전한 작업 환경을 유지하기 위한 지침과 규정을 계속 준수해야 합니다.

이 문서의 지침이 뉴욕주에서 발행한 기타 지침 문서와 다른 경우에는 최신 지침을 적용해야 합니다.

### 뉴욕주의 책임 있는 필수 및 2단계 소매 활동에 대한 기준

다음의 최소한의 주정부 기준 및 적용 가능한 연방 의무 사항을 준수하지 않는다면 어떠한 필수 및 2단계 소매 활동도 할 수 없습니다. 이러한 기준에는 미국 장애인법(Americans with Disabilities Act, ADA), 질병 통제 예방 센터(Centers for Disease Control and Prevention, CDC), 환경보호청(Environmental Protection Agency, EPA), 미국 노동부(United States Department of Labor)의 직업안전 위생국(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Administration, OSHA)의 최소 기준을 포함하나 이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본 지침에 포함된 주정부 기준은 주정부가 비상 사태를 철회 또는 개정하기 전까지 코로나19 공중 보건 비상 사태 기간 중 운영하는 모든 필수 및 2단계 소매 활동에 적용됩니다. 소매 사업의 소유자/운영자 또는 소유자/운영자가 지정할 수 있는 다른 당사자(두 경우 모두 "책임 당사자")는 이러한 기준을 충족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다음의 지침은 사람, 장소, 절차 등 세 가지 범주를 중심으로 구성됩니다.

## I. 사람

### A. 물리적 거리두기

- 책임 당사자는 필수 및 2단계 소매 활동에 대해 직원 및 고객이 점유 인증서에 의해 설정된 특정 지역의 최대 점유량의 50 퍼센트 이하를 차지하도록 제한하고, 모든 경우 승인될 수 있는 페이스 커버를 착용해야만 필수 및 2단계 소매 활동 장소에 입장하도록 허용하도록 보장해야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의무 사항은 고객이 2세 이상이며, 이러한 커버 착용을 의학적으로 견딜 수 있는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 책임 당사자는 반드시 핵심 활동이 안전하게 이루어지기 위해 거리를 좁혀야 하는 경우를 제외하고(금전 등록기 운영, 상품 이동 및 적재 등) 직원과 고객이 반드시 언제나 6 피트의 거리를 유지하도록 보장해야 합니다. 직원은 반드시 고객과 접촉할 때마다(구매 등록, 제품 포장 및 전달 등) 허용되는 페이스 커버를 착용해야 하며 특히 다른 사람과 6 피트 이내의 직원이 다른 사람의 6피트 내에 있을 때 착용해야 합니다. 직원은 다른 사람이 예기치 않게 6 피트 이내로 들어오는 경우 페이스 커버를 착용할 준비가 되어있어야 합니다.
  -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허용되는 페이스 커버에는 천 소재 페이스 커버, 입과 코를 모두 덮는 일회용 마스크가 포함되나 이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 그러나, 직물, 일회용, 기타 직접 만든 페이스 커버는 작업 특성상 일반적으로 개인 보호 장비 (personal protective equipment, PPE) 보다 높은 수준의 보호가 필요한 작업장 활동에 적합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활동의 경우 OSHA 지침에 따라 정의된 대로 기존 산업 기준 하에서 사용되는 N95 인공 호흡기 또는 기타 PPE를 계속 사용해야 합니다.
- 책임 당사자는 직원이 모든 방향(좌우 및 서로 마주할 경우)에서 최소 6 피트 이상 거리를 유지하여 떨어져 있고 사용 사이에 청소 및 소독 없이 작업 공간이나 공간을 공유하지 않도록 작업 공간 및 직원 좌석 공간의 수를 제한 및/또는 활용법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작업장 또는 공간 사이의 거리두기가 가능하지 않은 경우 책임 당사자는 공기 흐름, 난방, 냉각 또는 환기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구역에서 페이스 커버 대신 플라스틱 차단벽과 같은 물리적 장벽을 설치하고 사용해야 합니다.
  - 사용하는 경우 OSHA 지침에 따라 물리적 장벽을 배치해야 합니다.
  - 물리적 장벽으로 선택할 수 있는 옵션에는 스트립 커튼, 플렉시 유리 또는 이와 유사한 재료 또는 기타 불침투성 칸막이 등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 책임 당사자는 물리적 장벽(금전 등록기의 플렉시 유리 또는 파티션 등)을 설치한 경우가 아니라면 한 직원이 일하고 고객이 내점했을 때 직원과 고객이 모든 방향으로 최소 6피트 떨어져 있도록 소매점 내부 구성을 변경하도록 권고받습니다.
  - 책임 당사자는 고객과 접촉할 때 직원이 마스크 또는 천 소재 페이스 커버를 사용하도록 요구해야 합니다. 책임 당사자는 의학적으로 가능하고 2세 이상인 고객이 얼굴을 가리지 않고 입장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책임 당사자는 이러한 페이스 커버를 착용해서는 안 되는 의료 또는 기타 건강상의 이유로 인해 페이스 커버를 착용하지 않는 개인에게 의료용 문서 또는 기타 문서를 요청하거나 요구할 수 없습니다.

- 입장을 거부할 경우, 책임 당사자는 고객이 식품, 의약품, 의료 장비 또는 소모품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 필수 상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대안적인 픽업 및/또는 배송 방법을 제공해야 합니다.
- 책임 당사자는 적절한 사회적 거리두기 규칙을 고려하여 직원과 고객이 일하고 쇼핑할 수 있는 충분한 공간을 확보해야 합니다. 책임 당사자는 단방향 통로를 만들거나 교통 흐름을 재배치하고 교대로 금전 등록기를 사용하는 것을 고려해야 합니다.
- 책임 당사자는 한 번에 두 명 이상의 개인이 좁은 공간(금전 등록기, 엘리베이터, 창고 뒤편 등)을 사용하는 것을 금지해야 합니다. 단, 같은 공간에 있는 모든 개인이 허용 가능한 페이스 커버를 착용하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점유율은 단일 거주자가 사용하도록 설계되지 않은 경우 최대 공간 수용량의 50 퍼센트를 초과해서는 안 됩니다. 책임 당사자는 안전 프로토콜을 유지하면서 실외 공기를 활용하여 최대한 환기를 해야 합니다(창문 열기, 문 열기 등).
- 책임 당사자는 가능한 경우 선불 또는 터치 리스 지불 옵션의 사용을 권장해야 합니다. 가능한 경우 현금, 신용 카드, 리워드 카드 및 모바일 장치의 사용을 최소화합니다.
- 책임 당사자는 좁은 통로, 복도 등 일반적으로 줄이 형성되거나 사람들이 집합할 수 있는 모든 공용 공간(출근/퇴근 공간, 건강 검진 스테이션, 휴게실, 금전 등록기 구역 등)에서 6 피트의 거리를 화살표가 표시된 테이프 또는 표지판을 사용하여 내점한 고객의 양방향 이동 흐름을 완화하기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 가능한 경우 이동 방향을 하나로 유도하기 위해 마커 또는 장벽을 배치합니다.
- 책임 당사자는 일반적으로 줄이 형성되거나 사람들이 모이는 모든 공간 및 공용 공간(출근/퇴근 공간, 건강 검진 스테이션, 휴게실, 금전 등록기 구역, 상품 근처, 복도 등)에서 6 피트 공간을 나타내는 표지와 공간 마커를 반드시 게시해야 합니다.
- 책임 당사자는 다음의 조치를 통해 소매 과정에서 접점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 벌크빈과 덤프 쓰레기통의 사용 중지.
  - 고객에게 구매 제품 외에는 만지지 않도록 권고(제품을 진열대에 돌려 두는 것 제한 등).
- 책임 당사자는 DOH 코로나19 표지와 일치하는 내용의 표지판을 매장 내부 및 외부에 게시해야 합니다. 책임 당사자는 해당 표지가 보건부의 표지와 일치한다는 전제 하에 자신의 근무지 또는 근무 환경에 따라 자체적으로 맞춤형 표지를 제작할 수 있습니다. 표지는 직원과 고객에게 다음의 내용을 알리는 데 사용해야 합니다.
  - 6 피트의 사회적 거리를 유지할 수 없을 때 얼굴의 코와 입 가리기.
  - PPE를 적절하게 보관, 필요할 경우 폐기.
  - 물리적 거리두기 지침 준수.
  - 코로나19 증상 및 노출, 대응 조치 보고.
  - 손 위생 및 세척 및 소독 지침 준수.
  - 적절한 호흡기 위생과 기침 에티켓 준수.

## B. 밀폐된 공간에서의 모임

- 책임 당사자는 대면 모임(직원 회의, 휴게실, 재고 실 등)을 제한하고 CDC 지침인 "["코로나바이러스2019\(코로나19\) 계획 및 대응을 위한 사업체 및 운영자 임시 지침\(Interim Guidance for Businesses and Employers to Plan and Respond to Coronavirus Disease 2019 \(COVID-19\)\)"](#)에

따라 가능한 한 최대한 동영상 또는 화상회의 등 다른 방법을 사용해야 합니다. 동영상 회의 또는 화상 회의가 불가능한 경우, 책임 당사자는 통풍이 잘되는 열린 공간에서 회의를 진행하고 각자이 서로 6 피트의 사회적 거리를 유지하도록 해야 합니다(의자가 있는 경우, 의자 사이에 공간을 두고 직원이 교대로 의자에 앉게 하는 등).

- 책임 당사자는 화장실 및 휴게실과 같은 좁은 구역에서 적절한 사회적 거리두기를 실천해야 하며, 그러한 구역에서 사회적 거리두기를 준수할 수 없을 경우 점유율을 제한하기 위해 표지와 시스템(공간 사용 시 해당 내용 표시)을 개발해야 합니다.
- 책임 당사자는 직원이 모든 경우(휴식 등) 사회적 거리두기(6 피트 공간 등)를 준수할 수 있도록 근무 스케줄을 교대로 설정해야 합니다.

### C. 근무지 활동

- 책임 당사자는 다음과 같은 방법을 통해 대면 접촉 및 모임을 줄이기 위한 조치를 반드시 취해야 합니다.
  - 출근 직원을 근무지 필수 인력으로 제한.
  - 근무 시간 조정.
  -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에 맞추어 현장 인력 감축.
  - 근무 시프트 조정(A/B 팀, 교대 도착/출발 시간).
  - 가능한 경우 직원이 사회적 거리두기를 준수하는 동시에 제품과 접촉하는 인원의 수를 줄일 수 있도록 배칭 작업(한 직원이 모든 포장을 담당하고 별도의 직원이 배달을 담당하는 등), 밋/또는
  - 고객에게 구매 물품을 직접 포장하도록 권고(의무 사항은 아님).
- 책임 당사자는 개선된 청소 및 소독 절차를 위해 필요에 따라 소매 운영 시간 조정.

### D. 이동 및 상업

- 책임 당사자는 최대 점유율 의무 사항을 준수하기 위해 근무지의 인구 흐름을 모니터링하고 제어해야 합니다.
- 책임 당사자는 가능한 한 접촉을 제한하고 배송 구역을 지정해야 합니다.
- 책임 당사자는 가능한 경우 명확하게 지정된 별도의 출입구를 만들어야 합니다.
  - 책임 당사자는 시각적 표지나 마커의 사용을 포함하여 물리적 거리를 유지하면서 고객이 외부에서 대기할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합니다.
- 상품 배송의 경우 책임 당사자는 배송이 진행되는 동안 운전자가 차량에 머물러 있을 수 있는 터치리스 배송 시스템을 구현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 책임 당사자는 최소한 배송 진행 과정 동안 무료로 배송 관련 직원에게 페이스 커버를 포함하여 예상되는 업무를 진행할 때 사용할 수 있는, 허용되는 PPE를 제공해야 합니다.
- 책임 당사자는 상품 화물의 이송(배송 운전자로부터) 전후 반드시 손을 살균해야 합니다(물품 적재 전 반드시 손 살균, 모든 화물 적재 후 다시 손을 살균하는 것으로 마무리 등).

- 가능한 범위까지 커브사이드 및 내장 내 픽업을 사용하는 것과 더불어 책임 당사자는 클릭 앤 콜렉트, 배송, 픽업, 전화 쇼핑 등 매장 내 고객 수를 제한할 수 있도록 고객을 위한 원격 구매 대안을 제공해야 합니다.
- 책임 당사자는 직원 및 고객을 위해 탈의실을 적절하게 청소하고 위생 용품(손소독제 등)을 갖추고 있는지 확인해야 하며, 고객이 사용한 후 피팅 룸을 세척하고 소독할 것을 강력히 권장해야 합니다.
- 책임 당사자는 해당되는 경우 다음을 포함한 편의 시설을 폐쇄해야 합니다.
  - 셀프 서비스 바 및 샘플러.
  - 테이크아웃 또는 배달을 제외한 카페 및 식당/음료 서비스 구역.
  - 식수대.
  - 잡지 구비 구역.

## II. 장소

### A. 보호 장비

- 책임 당사자는 직원이 고객 또는 동료와 6피트 내에 있을 때 페이스 커버를 착용하도록 반드시 보장해야 합니다. 또한 직원들은 고객과 접촉할 때마다 페이스 커버를 착용해야 합니다(구매 입력, 상품 포장, 전달 등).
- 책임 당사자는 반드시 고객이 허용 가능한 페이스 커버를 착용한 경우에만 소매점 입장이 허용해야 합니다. 단, 고객이 2세 이상이고 그러한 커버 착용을 의학적으로 견딜 수 있을 때에만 적용됩니다.
- 특정 근무지 활동에 필요한 PPE뿐만 아니라, 책임 당사자는 허용 가능한 페이스 커버를 구매, 마련, 또는 기타 방식으로 확보하고 이러한 커버를 직장에서 무료로 직원에게 제공해야 합니다. 책임 당사자는 교체가 필요한 경우 천 소재 페이스 커버, 마스크 및 기타 필요한 PPE를 적절하게 직원에게 제공해야 합니다. 허용되는 페이스 커버에는 천(수제 봉제, 임시 가리개, 두건 등), 수술용 마스크, N95 마스크 및 얼굴 보호대가 포함되며 이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 페이스 커버는 사용 후 세척하거나 교체해야 하며 공유해서는 안 됩니다. 천 소재 페이스 커버 및 기타 유형의 PPE에 대한 추가 정보와 사용 및 세척에 대한 정보는 질병 통제 예방 센터(CDC) [지침](#)을 참조하십시오.
  - 천 소재 페이스 커버 또는 일회용 마스크는 페이스 커버 의무 사항이 더 높은 수준의 보호를 요구하는 근무지 활동에 적합한 페이스 커버으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N95 인공 호흡기는 천 소재 또는 수제 마스크가 충분하지 않은 특정 소매 활동에 일반적으로 필요합니다. 책임 당사자는 이러한 안전 장비에 대한 OSHA 기준을 따라야 합니다.
- 책임 당사자는 직원이 자신의 허용 가능한 페이스 커버를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해야 하지만, 직원이 자신의 페이스 커버를 직장에 공급하라고 요구할 수는 없습니다. 또한 이 지침은 직원이 개인적으로 소유한 추가 보호 장비(수술용 마스크, N95 호흡기 또는 안면 보호막 등)를 착용하는 것을 막거나, 책임 당사자가 업무적 특성으로 인해 직원들에게 더 많은 보호 PPE를 착용하도록 요구할 수 없습니다. 고용주는 모든 적용 가능한 OSHA 기준에 따라야 합니다.
- 책임 당사자는 도구, 레지스터 및 차량과 같은 장비의 공유뿐만 아니라 공유 표면을 만지는 것을 제한하기 위한 조치를 마련해야 합니다. 또는 직원이 공유 물건 및 자주 만지는 표면과 접촉할 때 장갑(무역 관련 또는 의료)을 착용하도록 의무화하거나 직원이 접촉 전후에 손을 소독하거나 씻도록 의무화해야 합니다.

- 책임 당사자는 식품 취급 전 과정에서 장갑을 착용해야 합니다.
- 책임 당사자는 적절한 페이스 커버를 포함하나 이에 국한되지 않도록 PPE를 적절하게 착용, 탈착, 세척, (해당되는 경우) 폐기하는 방법에 대해 직원을 교육해야 합니다.

## B. 위생, 청소 및 소독

- 책임 당사자는 "코로나19 민간 및 공공 시설 청소 소독에 대한 지침"(Guidance for Cleaning and Disinfection of Public and Private Facilities for COVID-19) 및 "확산 방지"(STOP THE SPREAD) 포스터를 포함하여 CDC 및 DOH가 권고하는 위생 및 소독 의무 사항을 준수해야 합니다. 책임 당사자는 청소 및 소독 일자, 시간 및 범위를 포함하는 기록을 보관해야 합니다.
- 책임 당사자는 근무지에서 다음과 같이 손 위생 스테이션을 제공 및 유지해야 합니다,
  - 손 씻기: 비누, 따뜻한 물, 일회용 종이 타올.
  - 손소독제: 손을 씻을 수 있는 시설을 이용할 수 없거나 이용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지역에서 최소 60 퍼센트 알코올을 함유한 알코올 성분 손 세정제.
  - 책임 당사자는 직원 및 고객이 사용할 수 있도록 매장 전역에서 손소독제를 사용할 수 있도록 마련해야 합니다. 고객의 출입구 및 금전 등록기, 지불 단말기와 같이 사용이 편리한 위치에 배치해야 합니다.
- 책임 당사자는 손이 눈에 띄게 더러워졌을 때 비누와 물로 씻어야 한다는 것을 나타내는 표지를 손 살균 스테이션 근처에 배치해야 합니다. 손소독제는 눈에 띄게 더러워진 손에는 효과적이지 않습니다.
- 책임 당사자는 PPE를 포함한 더러워진 물품을 폐기할 수 있는 쓰레기통을 주변에 배치해야 합니다.
- 책임 당사자는 공유 물품 및 자주 접촉하는 표면에 적합한 청소 및 소독 용품을 반드시 제공해야 하며, 이러한 표면을 사용하기 전후에 제조업체의 지침에 따라 직원이 이러한 용품을 사용할 수 있도록 권장해야 합니다.
- 책임 당사자는 많은 개인이 사용하는 고위험 지역 및 자주 접촉하는 표면을 더욱 자주 청소 및 소독하고, 소매점 내를 정기적으로 청소 및 소독해야 합니다. 청소 및 소독은 엄격하고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적어도 각 시프트 교대 후 매일 또는 필요에 따라 더 자주 실시해야 합니다. 시설 청소에 대한 자세한 지침은 보건부의 "코로나19 대비 공공 및 민간 시설의 청소 및 소독 임시 지침"(Interim Guidance for Cleaning and Disinfection of Public and Private Facilities for COVID-19)을 참조하십시오.
  - 책임 당사자는 화장실을 정기적으로 청소 및 소독하도록 보장해야 합니다. 화장실은 사용 빈도에 따라 더 자주 청소하고 소독해야 합니다.
    - 책임 당사자는 가능한 경우 화장실 사용 인원을 감축하여 거리두기 규칙을 준수하도록 해야 합니다.
  - 책임 당사자는 반드시 등재 소독제를 사용하여 정기적으로 장비를 소독해야 하며, 이러한 소독은 최소한 직원이 근무지를 변경하는 빈도로 실시해야 합니다. 코로나19에 효과적인 것으로 확인된 뉴욕주 환경보존부(Department of Environmental Conservation, DEC) 제품 목록에 등재된 제품을 사용하십시오.
  - 상품을 세척하거나 소독하거나 청소 및 소독하는 행위로 안전상의 위험이 발생하거나 재료 또는 장비를 손상시키는 경우, 책임 당사자는 사용 중간 사용할 수 있는 손 위생 스테이션 및/또는 일회용 장갑을 제공 및/또는 이러한 장비를 사용하는 직원 수를 제한해야 합니다.

- 책임 당사자는 직원 또는 고객 중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한 경우 노출된 구역의 청소 및 소독을 진행해야 하며, 이러한 청소 및 소독은 최소한 모든 수송 구역을 포함한 자주 접촉하는 표면(자동 판매기, 손잡이, 욕실, 문 손잡이 등)에 시행되어야 합니다.
- CDC 지침인 "시설 청소 및 소독"(Cleaning and Disinfecting Your Facility)은 코로나19 감염 의심 또는 확진자 발생의 경우, 다음과 같이 적용됩니다.
  - 환자가 사용한 구역 폐쇄.
    - 책임 당사자는 만약 피해 지역을 폐쇄할 수 있는 경우, 운영을 종료하지 않아도 됩니다.
  - 외부 문과 창문을 열어 해당 구역의 공기 순환 활성화.
  - 청소 또는 소독 전 24시간 정도 대기. 24시간 대기가 가능하지 않으면 가능한 한 오랫동안 대기.
  - 사무실, 욕실, 공용 구역 및 공유 장비와 같이 환자가 사용하는 모든 구역을 청소 및 소독.
  - 구역을 적절하게 소독한 후, 다시 사용하여 이용 가능.
    - 환자와 근접 또는 밀접하게 접촉하지 않은 직원은 소독 후 근무지로 복귀 가능.
    - "근접 또는 밀접" 접촉에 대한 정보는 DOH의 "코로나19 감염 또는 노출 후 공공 또는 민간 근로자의 업무 복귀에 대한 임시 지침"(Interim Guidance for Public and Private Employees Returning to Work Following COVID-19 Infection or Exposure)를 참조하십시오.
  - 환자가 소매점을 방문 또는 이용한 후 7일 이상이 경과했다면 추가 청소 및 소독은 필요하지 않지만 일상적인 청소 및 소독은 계속해야 합니다.
- 공유물(카트, 바구니, 계산 장비 등), 공용 구역(픽업 구역 등) 및/또는 공유 표면(문 등)의 취급과 관련된 소매 활동의 경우, 책임 당사자는 이러한 구역과 물체를 최소한 매일 청소 및 소독해야 합니다.
- 책임 당사자는 반품 상품의 수령 및 재판매 계획을 준비하거나 직원 및 고객의 안전을 보장할 수 있도록 규정을 변경해야 합니다. 여기에는 비상 상황에서 특정 품목의 반품을 제한하는 조치가 포함될 수 있습니다. 책임 당사자는 가능한 범위 내에서 반품된 상품을 세척 및 소독해야 합니다.
- 책임 당사자는 음식과 음료의 공유(뷔페 스타일 식사 등)를 금지하고 집에서 점심을 가져 오도록 권장하며 식사를 하면서 사교적인 거리를 유지할 수 있도록 충분한 공간을 확보해야 합니다.

### C. 단계적 재개

- 공중 보건 비상 사태 동안 최대 수용 인원으로 운영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책임 당사자는 생산 또는 작업 활동이 정상 수준으로 돌아가기 전에 운영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단계적 활동 재개를 권장합니다. 책임 당사자는 운영에 대한 변경 사항을 적용할 수 있도록 처음 재개할 때 근무 직원 수, 근무 시간 및 수용 고객 수를 제한하는 등을 고려해야 합니다.

### D. 커뮤니케이션 계획

- 책임 당사자는 주정부가 지정한 업계 지침을 검토하고 이해했으며 이를 이행할 것임을 보증해야 합니다.
- 책임 당사자는 직원, 방문자 및 고객을 위한 커뮤니케이션 계획을 수립해야 하며, 여기에는 적용 가능한 지침, 교육, 표지 등 직원들에게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일관된 수단이 포함됩니다. 책임 당사자는 웹 페이지, 텍스트 및 이메일 그룹, 소셜 미디어 개발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 책임 당사자는 고객이 PPE의 사용과 관련하여 특히 구두 소통 및 표지를 통해 6피트 사회적 거리두기를 준수할 수 없을 때 반드시 페이스 커버를 착용해야 한다는 CDC 및 DOH 지침을 준수하도록 권고해야 합니다.
- 책임 당사자는 적절한 위생, 사회적 거리두기 규칙, 개인 보호 장비의 적절한 사용, 청소 및 소독 절차를 준수하도록 직원 및 고객에게 상기시키도록 소매점 내부 및 외부에 표지판을 게시하십시오.

### III. 절차

#### A. 선별 및 검사

- 책임 당사자는 직원을 위해 의무적으로 매일 건강 검진을 시행하고, 가능한 경우에는 방문객에 대해서도 시행해야 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선별 조치는 고객 및 배송 직원에게는 의무적으로 실시하지 않습니다.
  - 선별 조치는 직원이 직장에 보고하기 전에 가능한 한 원격으로(전화 또는 전자 설문 조사 등) 수행하거나 현장에서 실시할 수 있습니다.
  - 선별 조치는 직원들이 선별 결과가 나오기 전 서로 근접 또는 밀접하게 접촉하지 않도록 조정해야 합니다.
  - 선별은 최소한 모든 직원 및 방문객(고객 제외)를 대상으로 의무적으로 실시해야 하며 직원 또는 방문객이 다음에 해당되는지를 판단할 수 있는 설문을 완료해야 합니다.
    - (a) 지난 14일 동안 코로나19 확진자 또는 코로나19 유증상자와 밀접 또는 근접 접촉 여부.
    - (b) 지난 14일 동안 코로나19 대한 양성 반응 여부. 및/또는
    - (c) 지난 14일 동안 코로나19 증상 경험 여부.
- 코로나19와 관련된 증상의 최신 정보에 대해서는 CDC의 "[코로나바이러스 증상\(Symptoms of Coronavirus\)](#)" 지침을 참조하십시오.
- 책임 당사자는 직원이 근무 시간 중 또는 근무 시간 외의 증상을 경험하기 시작하는 등 앞서 언급한 질문에 대한 대답이 변경되는 즉시 이를 보고하도록 의무화해야 합니다.
- 매일 실시되는 체온 검사는 고용 기회 균등 위원회(Equal Employment Opportunity Commission) 또는 DOH 지침에 따라 실시될 수도 있습니다. 책임 당사자는 직원 건강 데이터(체온 데이터 등)의 기록을 보관할 수 없습니다.
- 책임 당사자는 체온 검사를 비롯한 선별 활동을 수행하는 모든 직원이 소매점에 입장할 가능성이 있는 직원들에게 노출되지 않도록 적절하게 보호해야 합니다. 선별 활동을 수행하는 인력은 CDC, DOH 및 OSHA 프로토콜을 숙지한 고용주가 식별한 개인이 진행하는 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 선별 인원은 최소한 마스크 또는 천 소재 페이스 커버를 포함한 PPE를 제공받아 사용해야 하며 이러한 장비에는 장갑, 가운 및/또는 페이스 쉴드가 포함될 수 있습니다.
-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직원은 근무지에 들어갈 수 없으며 진단 및 검사를 받기 위해 의료 서비스 제공자에게 연락하는 지침을 받고 자택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책임 당사자는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을 경우 해당 결과를 주 및 지역 보건부에 즉시 통보해야 합니다. 책임 당사자는 직원에게 이용할 수 있는 의료 및 검사 자원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야 합니다.

- 책임 당사자는 직원이 코로나19가 의심되거나 확인된 경우 또는 직원이 코로나19에 걸린 사람과 밀접하거나 근접한 접촉을 한 후 직장에 복귀할 때의 절차 및 정책에 관한 보건부의 "코로나19 감염 또는 노출 이후 직장에 복귀하는 공공 및 민간 노동자를 위한 임시 지침"(Interim Guidance for Public and Private Employees Returning to Work Following COVID-19 Infection or Exposure)을 참조해야 합니다.
- 책임 당사자는 활동, 위치, 근무 시프트, 근무일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연락 책임자를 지정하여, 모든 근로자의 설문을 수령하여 검토할 의무를 맡기고 이러한 책임자에게 또한 설문 내용처럼 코로나19 관련 증상을 경험할 경우 직원이나 방문객의 보고를 받는 사람으로 임명합니다.
- 책임 당사자는 현장 안전 계획의 모든 측면을 지속적인 준수를 포함한 책임을 담당하며 현장 안전 모니터를 임명해야 합니다.
- 가능한 범위에서 책임 당사자는 적절한 PPE나 비접촉 수단을 통해 실시하는 배송 및 고객을 제외하고 직장 또는 지역의 다른 개인과 근접 또는 밀접 접촉을 할 수 있는 직원 및 방문자의 기록을 보관해야 합니다. 이러한 기록은 직원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는 경우 모든 접촉자를 확인, 추적 및 통보할 수 있도록 연락처 정보를 포함해야 합니다. 책임 당사자는 반드시 주 및 지역 보건부의 접촉자 추적 노력에 협력해야 합니다.
- 책임 당사자는 고객이 보건 선별지를 작성 완료하거나 연락처 정보를 제공하도록 요청할 수 없지만 고객에게 이러한 내용을 권고할 수 있습니다. 책임 당사자는 필요한 경우 접촉자 추적을 위해 기록 및 연락할 수 있도록 고객에게 연락처 정보 제공과 관련된 옵션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 B. 추적

- 책임 당사자는 현장 직원 코로나19 확진 결과를 통보하면 즉시 주 및 지역 보건부에 알려야 합니다.
- 사업장에서 접촉한 직원, 방문객 또는 고객이 확진 판정을 받은 경우 책임 당사자는 주 및 지역 보건부와 협력하여 작업장의 모든 접촉자를 추적하고, 해당 직원이 코로나19 증상 경험하기 시작한 시점과 확진 시점 중 더욱 이른 시점의 48시간 전부터 소매점에 입점했다고 기록된 모든 직원 및 방문자/고객의 주 및 지역 보건부에 통보해야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정보는 연방 및 주법, 규정에 따라 기밀로 유지되어야 합니다.
- 주 및 지역 보건부는 자택 분리 및 격리를 포함하여 감염자 또는 노출자에 대한 관리 및 이동 제한을 실시합니다.
- 코로나19 확진자와 근접 또는 밀접 접촉했다는 통보를 받은 사람과 추적 또는 기타 매커니즘으로 통보받은 사람은 자신의 고용주에게 통보 시점에 이를 보고해야 할 의무가 있으며, 상기 프로토콜을 준수해야 합니다.

## IV. 고용주 계획

책임 당사자는 반드시 근무지 내에 안전 계획을 눈에 띄게 게시해야 합니다. 주정부는 비즈니스 소유주 및 운영자가 코로나19의 확산을 막기 위한 계획을 세우도록 지원하기 위해 사업 재개 안전 계획 템플릿을 제공했습니다.

추가적인 안전 정보, 지침 및 자료는 다음 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뉴욕주 보건부 코로나바이러스(코로나19) 웹사이트  
<https://coronavirus.health.ny.gov/>

질병 통제 예방 센터 코로나바이러스(코로나19) 웹사이트  
<https://www.cdc.gov/coronavirus/2019-ncov/index.html>

직업 안전 및 보건 관리국 코로나19 웹사이트  
<https://www.osha.gov/SLTC/covid-19/>

[다음의 링크에서 본 지침에 따라 운영해야 하는 귀하의 의무를 읽고 이해했는지 확인하십시오.](#)

<https://forms.ny.gov/s3/ny-forward-affirmation>